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
람

기관의장

제784호 2010. 9. 27.(월)

차 례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1053호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 ----- 1

회
람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1053호

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
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시하오니 정정결정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9월 24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I.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·결정공시

1. 기 준 일 : 2009.1.1.
2. 대 상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4블럭 1-3롯트 외 9호
3. 결정·공시사항 : 개별주택의 지번, 개별주택의 건축물면적, 개별주택가격 등
※정정내역 참조
4. 가 격 통 지 등 : 정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

II.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

1. 신청기간 : 개별주택가격의 정정·공시일 부터 30일 이내
2. 신 청 인 :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
3. 신청방법 :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
4. 결과통지 : 신청기각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
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

